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을 관리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지급신청은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②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비고 (연락처)
③ 신청내용					
④ 중복지원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 예(시군구:) ☐ 아니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수임자 (위임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위임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